

# 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적용사례



정부가 건설 하도급거래 질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설하도급공정화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87년부터 시행한 결과 시행초기에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해도 하도급업체가 참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들어 전문건설업체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원·하도급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도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조정범위는 원사업자의 토·건도급한도액 순위가 150위 미만인 신고사건(1~150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처리)에 한하며, 사건의 조정 성립시 정부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고,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경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게 된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매년 접수되는 조정사례는 약 70여건 정도이며 그중 설비업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건설경기가 다소 위축되자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협의회의 김장하 조정과장은 "조정신청을 하기전에 1~2회의 내용증명을 밟고 난 후 신청을 하면 유리하다"고 밝히고 "계약은 반드시 구두약속이 아닌 서류에 의한 계약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원·하도급 간의 공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회원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전화 549-2105~6)에 접수된 분쟁사례를 게재 한다.

(편집자 주)

## 공사대금 중 잔금지급 지연

### 사건개요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충남 A시 소재 ○○주식회사 본사 공장 및 부대시설 건축설비공사 (계약상 공기 : 88년 ○월~90년 ○월)을 하도급 받아 계약 내용대로 충실히 시공 완료 하였으나 피신고인이 공사대금 중 잔금 ○○원의 지급을 지연하자 이에 신고인이 피신고인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원과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금액에 대한 어음할인료 ○○원을 지급,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되어 온 사례이다.

### 처리경과

분쟁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한 바, 신고인 측의 주장내용이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피신고인에게 공사대금중 미지급금 ○○원과 기어음으로 지급한 어음대금에 대한 법정어음할인료 (사건처리 당시 13.5% 적용·현행 12.5%) ○○원을 신고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권고하자, 피신고인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내용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신고인은 진정을 취하 하기로 합의 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대로 심결, 처리했다.

## 공사중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 사건개요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부터 K도 S시 소재

○○청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완료하였으나 본 건 공사 시공기간 중인 19○○년 ○월○일 공사현장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물 사고로 인해 신고인 측 소속 인부 1명이 사망하는 등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 유족 측에서 국가(발주자)와 피신고인 및 신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손해배상에 대한 양 당사자간의 다툼으로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신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사대금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 분쟁조정협의회에 이첩 되어온 사례이다.

### 처리경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을 조사한 바, 상기 재해발생으로 인한 유족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본 건 공사대금과는 별개라고 판단되어 이에 피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불응하여 결국 분쟁조정협의회의 심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했다.

양 당사자의 주장내용 및 심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 측 주장

사망재해 발생원인은 사망자가 19○○년 ○월 ○일 15시경 중참을 먹고난 후 피고인 측 소속 근로자가 피워놓은 모닥불 옆에서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하던 중 6.25당시 사용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폭발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적인 책임은 국가(발주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안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피신고인 측에 있으며 당사는 단지 사용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다.

만약 손해배상 책임을 저야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것이며 본 건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피신고인 측은 공사대금을 마땅히 지급해 주어야 한다.

**피신고인측 주장**

신고인 측과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서 제17조에 의거 「공사 시공중 인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신고인)이 전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이 있으므로, 신고인 측도 당연히 본 건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 의거, 아직까지 본 건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협의회 심결 내용**

분쟁조정협의회는 피신고인 측이 주장하는 계약조항 제17조를 본 건 사망재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심결했다. 왜냐하면 본 건 재해는 당해 공사로 인한 직접적인 재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본 건 하도급공사를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시공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피신고인 측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과 재해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 ○○원 및 지급시까지의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설비**

**그냥, 한마디**

어린아이들의 울음을 멈추게 하는데는 대체로 세 가지의 유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회초리를 들고서 위협하는 방법으로, 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아이는 매를 맞는게 무서워 조용해진다.

둘째는 과자나 장난감을 주어 달래는 방법이 있다.

세째는 그 아이가 왜 우는지의 원인을 밝혀내어 직접 그 불만이나 고통을 해소시켜 주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세번째일 것이다.

그런데, A氏의 아이는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은하철도 999를 태워달라고 어거지를 쓰며 울고 있었다.

그래서 A氏는 한대 쥐어박고 싶은 심정을 억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이해시켰지만 아이는 「아빠가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쓰다가 나중엔 동생까지 끌어들여 노골적으로 항의하기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A氏는 참다못해 회초리로 아이를 위협해서 울음을 멈추게 했지만 두고 두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팽이는 팽이채로 때릴 때에만 둘 수 있다. 팽이는 맞아야만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A氏의 아이같은, 팽이같은 어른들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하다.